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
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6. 11. 1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0월 31일 · 김성배 의원 외 3인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31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2차 운영위원회(2006. 11. 1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 성 배 의원)

가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제3항이 개정(법률 제7935호, 2006.4.28)

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
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
도록 변경됨에 따라,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우리구 의회의 실
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의회의 연간 회기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함
(안 제2조)
-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
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함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고, 제2차 정례회
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집회함(안 제4조)
-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
하고,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
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함(안 제5조)

다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」 제38조(정례회), 제41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
수)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 등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: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라도균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